

안내문 및 공고문

<안내문>

1. 귀하 및 귀 기관(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무부는 생산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하는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이민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국가 간 이주현상 분석 등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외국인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9. 7월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와 협정을 체결하여, 2009년 12월부터 외국인과 이민에 관한 정책과 제도를 개발 연구하는 국·내외 유일한 전문연구기관인 『이민정책연구원』을 산하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연구원 주요사업 : 한국의 이민정책·법제도 개발을 위한 연구, 글로벌 이주 동향 파악, 외국인·이민 분야의 이해증진 및 전문인력 양성, UN·IOM·UNHCR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 직원 현황 : 임원 2명(원장, 부원장), 연구진(박사 8명, 석사 1명), 행정직원 등 총 21명
 - 위 치 : 현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20. 4월경 서울시 양천구로 이전 예정)
3. 이와 관련하여, 이민정책연구원에서는 제4대 이민정책연구원장을 공개 경쟁모집 중에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연구에 관한 풍부한 지식, 국제적 감각 및 이민정책에 대한 확고한 전략과 비전 등을 갖춘 책임자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 등 협조하여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 현직에 있는 사람은 이민정책연구원장으로 임용될 경우 '휴직'이 가능해야 함

- 원장 공모 개관 -

(공고 기간) 2019. 8. 12.(월) ~ 2019. 10. 4.(금), 8주간

(계약 기간) 3년, (임기기간 : 2020. 1. 9. ~ 2023. 1. 8.)

(수행 직무)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업무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

별첨 : 원장 응모 관련 신청서류 일체(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원진술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이며 어학성적 제출은 필요 없음)

<공고문>

IOM이민정책연구원 원장 공개모집 공고

1. 임용 직위 : 원장

2. 임용(계약)기간 : 3년

3. 수행 직무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4. 응시자격

본 연구원 정관 제5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내·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가. 이민정책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기획, 경영, 마케팅 등 조직
관리 능력 소유자

나. 대한민국 정부, 경기도 등 예산 지원 기관 및 IOM 등 국제기구와 원만한 관계
유지 및 이해관계 조정능력 보유자

다. 기관 운영에 대한 확고한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고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자

라. 조직 구성원과의 원활한 소통능력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자

마. 도덕성을 갖춘 자

바. 국제 감각을 가진 영어 능통자

사. 현직이 있는 자는 원장으로 임용 시 휴직이 가능한 자(겸직 불가)

5. 선발절차

가. 서류전형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임용자격요건 해당 여부 등 심사

나. 이사회에서 면접 심사 후 후보자 선정

다. 후보자에 대한 IOM 사무총장과 이사장 공동 승인 후 이사회가 임명
(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보)

6. 응시원서 접수

- 가. 기 간 : 8주간, 2019. 8. 12.(월) ~ 2019. 10 4.(금) (등기우편 소인 기준)
※ 전형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전형과정 중 적격자 없을 시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
- 나. 접수처 : (1040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웨스턴 타워 4동 8층
IOM이민정책연구원 기획관리팀
- 다. 접수방법 : 기간 내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등기우편으로 접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원진술서 양식 등은 연구원 홈페이지(www.iom-mr tc.org)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7.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나.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다. 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1부
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소정양식) 1부
마. 신원진술서(소정양식) 1부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사. 경력증명서 1부
아. 주민등록초본 1부 (외국인의 경우 여권 사본)

8. 기타사항

-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 시 임용 취소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IOM이민정책연구원 기획관리팀 (☎ 031-920-5651, Email: hr@iom-mr tc.org)으로 문의 바랍니다.

※ 별첨 : IOM이민정책연구원 정관 제5조(임원의 결격사유)

2019년 8월 12일

IOM이민정책연구원장

※ 별첨 : IOM이민정책연구원 정관 제5조제2항(임원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또는 연구원에 재직했던 자로서 연구원 인사규정에 따라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